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지침

2021. 7.

국 가 공 공 건 축 지 원 센 터

개정이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일부개정(2019.12.19.)됨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면제 및 재신청 사업을 개정된 법과 일치하도록 하는 한편, 사전검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사전검토 업무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검토 신청일과 신청방법(온라인 접수)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전검토 접수일 변경(안 제6조)

사전검토 접수일을 월 2회(1월부터 11월의 첫 번째, 세 번째 주 화요일)로 확대 변경하여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

나. 동일 기관의 한회차 접수 건수 조항 삭제(안 제6조)

동일 기관에서 3건을 초과하는 사업을 신청하여도 접수하여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

다. 사전검토 접수 방법 변경(안 제6조)

한글문서 작성 후 전자문서시스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기존의 방식을 온라인시스템 접수 방식으로 변경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향후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데이터 구축을 제고하기 위함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면제 대상사업) (생략)	제5조(면제 대상사업) (현행과 같음)
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 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 는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공공건 축지원센터가 <u>같은 조 제2항</u> 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 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 는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공공건 축지원센터가 <u>제22조의2에</u>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6조(사전검토의 신청) ① (생 략)	제6조(사전검토의 신청 <u>및 접수</u>)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전검토 접수는 <u>매년 1월부터 10</u> 월까지는 첫 번째 주 화요일, 11월은첫 번째, 세 번째 주 화요일	② <u>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주</u> <u>화요일</u>
③ (생 략) 2. <u>동일 기관에서 한회 차에 3건을</u> <u>초과하는 사업을 접수하여 사전검토</u> 업무 수행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③ (현행과 같음) 2. <u>(삭제)</u>
④ <u>제3항에 따라</u> 접수일이 변경될 경우 그 사유와 변경된 접수일을 1개월 전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u>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장은 제3항에</u> <u>따라</u>
⑤ 공공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신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 7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 획 사전검토 신청서'(이하 '사전검 토 신청서'라 한다)를 <u>작성하여 [별</u>	⑤ 공공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신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 7조에 따른 [별첨1] '공공건축 사업 계획 사전검토 신청서'(이하 '사전 검토 신청서'라 한다)를 온라인시스

쳙 했 개 정 아

함께 공문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생략)

3.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 보완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 우

제7조(사전검토 신청서의 주요내용) ①~② (생략)

③ (신설)

제8조(사전검토의 재신청) (생략) 1~4. (생략) 5.(신설)

제10조(사전검토의 기간) ① 사전검토 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 후 30일 이 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____은 제외한 다.)로 한다.

②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추가자 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완하는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

부자료와 함께 온라인으로 공공건축지 워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3. 제12조에 따라 사전검토 의견서 통지 전에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시행한 경우

제7조(사전검토 신청서의 주요내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전검토 신청서 및 첨부자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거나 근거가 미흡하여 검토의견 제시가 어 려운 경우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장은 공공기관에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관련 내용을 보완작 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8조(사전검토의 재신청)(현행과 같 유)

5. 사전검토 의견을 제공받은 후 3 년 이상 공공건축 사업이 지연되 어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제10조(사전검토 기간) ① 사전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 후 30일 이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 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 체공휴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②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장은 제7조제3 항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추 가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해당 공공기관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이 제출서류를 보

현 행	개 정 안
한다.	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관련 보완자료를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14조(사전검토 수행 지침) ① 사전 검토 전문가는 [별첨 2]의 서식에 따 라 사업목표에 따른 건축디자인 방향 의 적정성, 이를 구현하기 위한 디자 인관리체계의 실효성 및 예산계획의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u>작성한</u> 다.	제14조(사전검토 수행 지침) ① 사전 검토 전문가는 [별첨 1]의 내용을 토 대로 의견서를 작 성한다.
제16조(사전검토 내용의 활용) ① (생략)	제16조(사전검토 내용의 활용) ① (현 행과 같음)
② 자료는 「건축서비스산 업 진흥법」 제23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해당 건 축물등의 착공 전에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자료를 「건축서비스산 업 진흥법」 (삭제)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등의 착공 전에 공공건축지원센터 (삭제) 에 통보해야 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전검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검토의 목적)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는 공공기관의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검토를 통해 국가의 주요한 자산인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하며, 합리적인 예산계획과 적정한 수준의 기획 및 설계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업무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공공건축 사업계획"이란 공공건축의 조성 시 기획단계에서 수립하는 계획으로, 사업의 목표와 이에 따른 공간 구성 및 프로그램 기획에 관한 사항,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한 사항, 일관된 디자인구현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등 합리적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계획을 말하다.
- 2. "공공건축"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
- 3. "건축디자인"이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디자인관리"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품격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 우수한 디자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시공단계에서 설계 의도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5. "공공건축의 품격"이란 주변환경과의 관계, 규모, 형태, 구조, 재료, 시공수준 등을 통하여 공공건축의 목적과 지역의 정체성을 창출할 수 있는 적절성을 말한다.
- 6. "공공건축의 품질"이란 안전, 보건, 기능, 쾌적, 자원절약과 재활용 등 공공건축의 객관적 성능을 말한다.
- 7.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란 공공건축이 갖추어야 할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인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을 말한다.

제2장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의 대상

제4조(사전검토 대상사업) 사전검토 대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1.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 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1항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사전검토 면제 대상 사업 중 설계공모 의무화 대상 사업을 설계공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자하는 건축물

제5조(면제 대상사업) 사전검토 면제 대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1항 및 제20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건축물
- 2.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건 축물
- 3.「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받은 건축물
- 4.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받은 건축물
-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가 제22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3장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수행절차

제6조(사전검토의 신청 및 접수)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의 사전 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사전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사전검토 접수는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주 화요일로 하며, 12월은 법정업무 결산기간으로 사전검토 접수를 받지 아니한다. 단, 공공건축지원센터와 사전협의를 거쳐, 관계법률에 명시된 국가사업으로서 긴급한 추진이 요구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2월에도 접수할 수 있다.

- ③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장은 사전검토 업무의 실효성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검토 접수일을 변경하거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 1. 제2항에 따른 접수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 일에 해당할 경우
 - 2. 그 밖에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장이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 ④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접수일이 변경될 경우 그 사유와 변경된 접수일을 1개월 전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신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별첨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이하 '사전검토 신청서'라 한다)를 온라인 시스템에서 작성하여 [별첨 2]에 따른 첨부자료와 함께 온라인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검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1. 제4조에 따른 사전검토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 2. 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서류 검토결과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 3. 제12조에 따라 사전검토 의견서 통지 전에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시행한 경우

제7조(사전검토 신청서의 주요내용) ① 사전검토 신청서의 주요내용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3조에 따라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발주방식, 디자인관리방안,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한 사항을 포함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개요(사업의 목적, 사업 추진경위)
- 2. 사업계획(지역 특성, 부지 특성, 규모, 예산,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설계용역 발주방식, 향후일정, 사업관리체계)
- 3. 건축계획(배치 계획의 주안점, 공간 및 시설계획의 주안점, 지역 활성에 대한 기여 방안, 향후 시설 운영·활용 계획)
- ② 사전검토 신청서는 사업목표와 해당 공공건축에서 추구하는 공공적 가치가 명확히 드러나고, 그에 따른 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추진 방식 등에 대해 합리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사전검토 신청서 및 첨부자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거나 근거가 미흡하여 검토의견 제시가 어려운 경우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장은 공공기관에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관련 내용을 보완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8조(사전검토의 재신청) 사전검토의 재신청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전검토를 재신청하여야 한다.

- 1. 건축물등의 입지를 변경하는 경우
- 2. 건축물등의 부지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 3. 공사비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 4. 건축물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 5. 사전검토 의견을 제공받은 후 3년 이상 공공건축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 을 변경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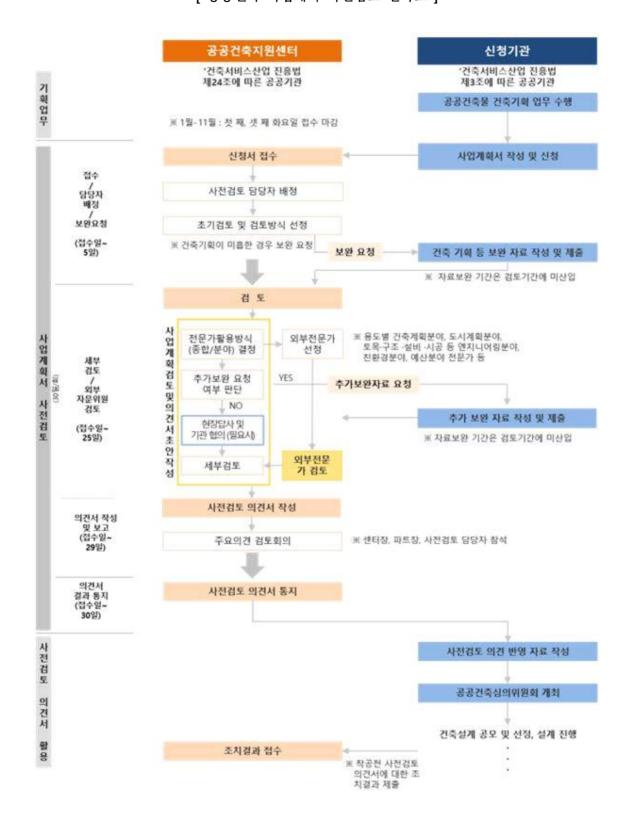
제9조(사전검토의 철회) 사전검토 신청 후 사업취소 등 중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전검토 기간) ① 사전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 후 30일 이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검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추가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전검토 의견의 통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장은 사전검토 결과가 사업추진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통지하고 필요시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절차도]



제4장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수행방법

제12조(사전검토 전문가의 선정)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사전검토 전문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선정한다.

-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 2.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 3.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 4.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제13조(외부 전문가의 활용)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장은 사전검토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의 자격 요 건은 제12조에 따른다.

제14조(사전검토 수행 지침) ① 사전검토 전문가는 [별첨 1]의 내용을 토대로 사업 목표에 따른 건축디자인 방향의 적정성, 이를 구현하기 위한 디자인관리체계의 실 효성 및 예산계획의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견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 부지를 방문하거나 해당 공 공기관 담당자와 면담 등 현장확인 업무를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보안유지) ① 사전검토 전문가는 사전검토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및 자료 등이 유출이 되지 않도록 보안각서[별첨 3]를 제출하여야 하며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전검토 전문가는 해당 검토 대상사업의 설계용역업체로 입찰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제5장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내용의 활용

제16조(사전검토 내용의 활용) ① 검토의견을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예산편성, 발주 방식의 결정, 설계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를 추진할 때 이를 참고하여야 하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라 공공 건축심의위원회에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 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등의 착공 전에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 ③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라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 건축물을 사전검토를 거쳐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사전검토 내용을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단, 설계비 추정가격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공공기관은 「건축법」제4조의2에 따른 건축심의, 실시설계 및 시공발주 시 과업내용서 작성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준용하여야 한다.

[별첨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 사전검토 온라인 작성 시스템(https://submit.npbc.or.k)에 접속하여 작성

	사전검토 신청서 온라인 작성 시스템				
제출번호	[국가] 미정	Zal .	출일자	미정	
기관명			수일자		
사업명		25	축구분		
부지위치		A	업규모	부지면적 ၁,০০০㎡, 연면적 ၁,০০০㎡(০০%)	
총사업비(백만원)			용도		
담당자명		당	당부시		
담당자 전화번호		달당	자이메일		

٨			

1.사업의 목적

사업의 목적

※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기술

2.사업 추진 경위

	사 진절 차	□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 □ 총사업비 심의 □ 중기재정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 □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수행 여부	건축기확업무	□ 기본계획 □ 마스터플랜 □ TFT 운영 □ 전문가 자문 □ 수요조사
여부	각종 조사 협의 평가	□문화재 관련조사 □ 혹량 및 지반조사 □ 도시계획 사전협의 □관계기관 사전협의 (기관명:) □ 환경관련 평가 □ 교통관련 평가 □ 교육환경 평가
	사업 추진경위	[샘플 데이터] · 16.00.; ፡০০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 방침 · 16.00. : 제 ○차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 재검토) · 16.00. ; ০০역사 공원 전략환경영항명가 환경부 승인 · 16.00. : ɒ০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추진 · 16.00. : 제 ○차 중앙지 방재정투자심사 의뢰 · 16.00. : 제 ○차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 조건부 승인)

※ 사전 행정절차와 건축기회업무, 각종 조사 협의 평가의 수행 여부를 체크[✔]하고, 사업 추진경위 란에 시간 순으로 기술 ※ 표기된 절차 외 수행 절차(교육환경영향평가, 공공도서관 건립 사전평가, 업무협약, 기존 건물 정밀안전진단, 석면조사 등)는 '사업 추진경위'란에 직접 기재

사업계획

1.지역 특성

◦ 부지 주변 **지**역 여건

구 분	특 성
도시계획	[샘플 데이터] ·부지 남축 oo로는 po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구간에 해당하며, popp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 · 인접 부지에 복합령 직속기관(po면수원, po면구정보원, popp진흥원)이 조성될 예정 · popp 남축(po로-주출입구)과 동축(po로타리~po로)으로 신규 도시계획도로와 공원(예정) 조성을 추진 중
인구특성	[샘플 데이터] ·⊙⊙군은 전국에서 4번째로 노령화지수가 높은 지역 ·[참고 : 통계지리정보서비스(https://sgis.kostat.go.kr), 통계주제도_노령화지수]
산림지·녹지 분포	[생품 데이터] ·지구단위계획 지침 상 서축 아파트단지 남쪽으로 연결녹지 계획 ·지구단위계획 지침(환경영향평가)에 의해 근린공원 중앙(사업부지 목축)에 원형보전된 보존녹지 위치
주변 공공건축·공공공간 현 황	[샘플 데이터] - 인근에 ♡지원·지검, ♡♡♡정보원, ♡○대학교·병원 등이 입지하여 본 시설과 업무연계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 사업부지 동촉에 ♡○천변 친수공간(♡○나무숲, 잔디구장 등)으로 연결되는 육교가 위치
기타	[샘플 데이터] · ɔo산업단지 중심에 위치하여 주변 공장의 악취, 소응, 날림먼지 대책 필요

※ 인구 및 가구 특성, 문화재와 공공시설 분포 등 부지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을 기술

※ 단순히 지역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나열하기보다는 대상사업과의 관련 속에서 해당 지역의 현황을 기술하는 것이 중요

◎지역사회의 요구

구분	주요 내용	대용	

구 분	주요 내용	대용
수요조사	[샘플 데이터] <주민들의 주요 의견> · 자전거 주차장에 비가림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 공원에는 나무 그늘이 풍부했으면 좋겠다	[생물 데이터] ·공모 시 설계지침에 반영 ·운영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반영
민원 동향	[생물 데이터] <언론보도> - "coo미슬관, 건립 방향 논의"(16.00.00, co일보) - "co 원도심 지역, 테마행 미슬관 조성하지"(16.00.00, co일 보) <예상되는 민원>- 기피시설 신설에 따른 지역 주민과의 마찰 및 민열 발생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해당공사의 공정관리 난 점 예상	[생품 데이터] ·계획 초기부터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৩০시 등의 민관협의체를 조직하고 공 칭회 등 정기적인 업무렴의를 실시하여 갈등 조정

첫 본 사업과 관련한 설문조사, 언론 보도자료, 민원 등향, 예상되는 민원 분쟁사항 및 기타 지역사회의 영향에 대해 기술

2.부지특성

◦사업부지 개요

사업부지 개요		시 도	시 군 구	
	부지위치	요 면 동	부 지 주 소 상 세	
		□ 사업부	지가 2개 이상	
	부지면적(#/)			
	지역 지구			
고역 지구 등 안에서의	건축물 용도			
정위제한 여부	조건 제한 예외사항			학교)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한리, 폐기물관리 등)검토 필요

※ 지역 지구 등 지중여부와 해당 건축을 용도의 행위제한 내용을 기재 (참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f.go.kn/web/actreg/arservice/ArParcelRestrictListExtFrame.jsp)

∘ 접근성

구분	한 왕	대용
대중교통 접근성	[생품 데이터] 지하철역 또는 노선버스 정류장으로부터 00m 이내	[샐플 데이터] 셔틀버스 운영 예정
보행 접근성	[생플 데이터] 주변 보행로 조성 유무, 횡단보도의 위치 등	[생품 데이터] 횡단보도 신설 협의
진입도로 뮤무	[샘플 데이터] o축_oo도로 (om 도로, 왕복 o차선) 근접	[샘플 데이터]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정('00.00.)

쑛 부지 주변의 대중교통 현황과 보행 접근성에 대해 점검하고, 문제발생이 우려될 경우 대용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기술, 진입도로는 현황도로와 향후 계획도로(개설시기)를 구분 하여기재

∘물리적 특성

구분	특 성
경사·고저	[샘플 테이터] - 토지특성조사의 고저구분 : 급경사 - 사업부지는 전체적으로 동고서저의 형상(표고차: 10~15m)을 하고 있으며, 부지 남동족 진입도로(+75)와 북쪽(+85)은 약 5m의 레벨차이가 있음
지반상태(성토지반, 하천인 전, 매립지·간척지 등)	[생품 데이터] •부지는 co강변에 위치하여 지반은 대부분 연약지반이며, 지하수위는 ?2m 레벨에 분포함으로 지하공사에 어려움이 예상됨
부지정리 완료 여부	[생용 데이터] ·부지 내 pp건축을 사용 중
기타	

♥ 부지의 물리적 특성과 그에 따른 대용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기술

3. 규모

◦실별 규모(space program)와 산출근거

구분	세부시설	산출근기	면 적 (㎡)	비율(%)	шэ
	합 계(연면적)				

[♥] 세부시설의 용도와 면적을 연관성이 큰 시설끼리 묶어서 제시하며, 공용공간은 별도 구분하여 표기

◦부지**와** 건축물의 규모

구분	부지면적	건축단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조경면적	공계공지	ē÷
법정규모	0,000 0 °	0,000#(00%)	0,000 m '(00 %)	대지면적의 po%(com²) 이상	le le	po름 이하
계획규모	0,000#	o,poom(oo%)	p,popm"(pp%)	대지면적의 ၁৩%(৩၁ m')	ın.	지상 총, 지하 -총
관련법규		'ɔo 지구단위계획'	'oo 지구단위계획'	「op시 건축 조례」 제 po조(대자안의 조 경)	po해당사항 없음	'oo 지구단위계획'

○주차장 규모

관련 법규	주차대수 산정용 연면적	법정 주차대수	계획 주차대수	주차장 규모(예 상)	지하주차장 규모
[샘플 데이터] 「co시 주차장 설치조례」 제cc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ccc㎡당 1대	0,000m	oo대 이상	Пос	o,000m	o,ooom'(voEH)

^{※ (}주의) 법정 주차대수 산정 시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연면적을 적용

4.에 산

∘ 총사업비

대분류	소 世界	금 액 (백만원)	81 五
	용지구입비		
A. 용지비	보상비		
	소계		
	부지조성공사비		
	건축공사비		
B. 공사비	기존시설 철거비		
	독수요인 보정		
	전시공사비		
	소계		
	설계공모비용		
	설계비		[샘플 데이터]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의도 구현관련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관련		
	인증 관련		[샘플 데이터]건축물에너지효율, 녹색건축 인증 비용
C. 부대비	평가 및 조사 관련		[셈플 데이터]석면조사, 측량 및 지반조사 비용
	설계적정성검토		
	설계경제성검토		
	시설부대비		
	<기타>설계 경제성 검토(VE) 관련		
	소계		
D. OIBIBI	अभाग		
	E. 총사업비		A+B+C+D

[#] 총사입비를 용지비, 공사비, 부대비, 예비비로 구분하여 기재, 구성내역에 대한 소분류 항목은 필요 시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인증 관련: 건축물에너지효율, 제로에너지건축물, 녹색건축,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지능형건축물 등 각증 인증 비용을 책정

* 평가 및 조사 관련 : 축량 및 지반조사, 석면조사, 정밀구조안전진단, 환경관련 평가, 교통관련 평가, 문화재관련 조사 등 각종 평가 및 조사 관련 비용을 책정 * 표기된 항목 외 소요비용(설계 경제성 걸토(VE), 총사업비 설계 적정성 걸토,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관련,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관련,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텔 (BEMS) 관련 등)은 <기단>관에 줄을 추가하고 예산 항목을 직접 기재한 후 작성

∞ 건축공사비 검토 (단위 : 만 원/㎡)

단위면적당		산 출 근 거	
건축공사비	조달청 유사사례 평균	기타 예산편성 기준	독수요인 보정
	[샘플 데이터] 200.2 (완공연도 '20~'20)	[생품 데이터] 000.0 (000 예산편성 지칭 / 000 매뉴얼)	[샘플 데이터] o.o% (공사 난이도에 따른 할증) 반영)

※ 조달청 유사사례 공사비는 조달청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문석' 자료를 토대로 작성·공사비 검토 시 유사사례 완공연도를 감안하여 비교하고 건설투자 GDP Deflator 보점

※ 부지조건(급경사지, 연약지반 등), 에너지 성능 향상 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이 우려될 경우 '특수요인 보정'란에 합증을 또는 추가 비용을 기재하여 보정

∞설계비 검토 (단위:백만 원)

설계비			산 출 근 거		
을 게 비	종별 및 도시작성 구분	건축설계 대가요율	인증관련 추가요율	특수요인 보장	설계비 산정 공사비
	제 () 중 ()급	[샘플 데이터]이.00%	[샘플 데이터]ං.>%	[샘플 데이터]o.o% (전통양 식설계)	[생품 데이터]000.0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교시 제2020-635호, '20.9.14. 일부개정)을 기준으로 작성

호 설계비 산정 시 '광사비'라 한은 건축주의 공사비 중예정급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함

※ BIM설계, 전통양식설계,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 설계비 상승이 우려될 경우 '특수요인 보쟁'란에 추가요율을 기재하여 보쟁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비용 검토 (단위 : 백만 원)

감리비	산 출 근 거			
용리미	감리방식	근 거 번 형		
	○ 상주광리 ○ 비상주광리 ○ 건설사업관리	[샘플 데이터] (건축사법에 따른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11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4조(공사광리업무의 대가산정)제2항 및 제18조(실비정역가산식에 따른 대가산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2호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 강리방식에 대해 해당란에 체크 [/]

※ 감리비 산출근거는 건축사법에 따른 기준 또는 건설기술진홍법에 따른 기준 등 근거법령을 기재하고 자세한 산출자료는 별도 참부

5.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구 분	취득 계 획	추진근거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	IJ	[생품 데이터] 「광광기관 에너지이용 확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연면적이 3,000 ㎡ 이상이므로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취득 외무
	제로에너지건축물	Ω	[썸물 데이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000형 공기업 00시설 신축 건물로 제로에너지 건축을 인증 의무 대상
각종 인증의 의무 대상 여 부 등	녹색건축 인증	11	[생물 데이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연면적이 3,000㎡이상 신 축건불로 인증 의무 대상
	지능행건축물 인증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П	[샘플 데이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3항에 따라 ০০০০가 신축하는 ০০시설로 인증 의무 대상
기타 폐시브(Pa	assive)계획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제	고방안	[생플 데이터] 연면적 10,000㎡이상의 신축 건축물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구축 운영 예정

∞ 인증 취득 계획이 있을 경우 해당란에 체크 [✔]

6. 설계용역 발주방식

설계 공모방식(1순위)	○ 일반설계공모	○ 2단계 설계공모	○ 제안공모	○ 제한공모	○ 지명공모	○입찰(PQ적용) ○기타	
ગ							

후 설계 발주방식에 대해 해당란에 체크 🖊

7. 향후 일정

구분)	1 간	세 부 일 정
설계공모기간	•	일	[생품 데이터] ·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 일반설계공모 기간 기준(132일 이상) 준용
설계기간	~0	뭘	[생품 데이터] - 발주 전 준비기간 0개월 - 기본성계 0개월 - 실시설계 0개월 - 설계경제성검토(VE) 0개월 - 각종 인·허가 및 인종 취득 0개월
공사기간	~6	둳	[생품 데이터] - 발주 전 준비기간 0개월 - 부지조성공사 0개월 - 공사기간 0개월 - 시윤전기간 0개월 - 개관목표 100.00.

표 사전검토 이후 설계, 시공에 예상되는 기간을 작성

8. 사업관리체계

주무부서명	
현황 및 계획사항	□내부 전문작업(건축, 토목 등) 담당 □ TF팅 등 부서 간 합력체계 구축 □ 자문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구성 □ 총괄계획가(MP) 또는 총괄건축가(MA) 활용
세부내용	[생물 데이터] · oo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체계 구축 · 주민, 운영자, po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축 - 사업 기획 단계부터 준; 후 시범운영 단계까지 운영 - 사업계획에 대한 비전 제시, 기본계획안 검토 등의 업무 수행 - 외부전문가는 po분야 o명, po분야 o명, po분야 명으로 구성 - 자문회의 월 o회 이상 개최, 운영비 poo만원 확보 po분야 전문가를 충끝계획가로 위촉하여 초기 기획업무부터 사업 중료 시까 전 과정에 활용할 계획

호 사업관리체계의 원황 및 계획사항에 대해 해당란에 체크 [✔] (중복체크 가능)

건축계획

1. 배치 계획의 주안점

구분	주요 고려사항
설계의 주안점	[샘플 데이터] - 배치계획 - 사업부지 동쪽의 자연경관(co랑 조망 가능)이 우수하므로, co동 배치 및 평면계획 시 조망을 확보하도록 유도 - 동선계획 - 도로(co로)와 부지 계획고의 레벨 차이가 크므로 전면 도로에서 보행 접근이 어려움. 대중교통 이용자 등 co로에서 접근하는 보행자를 고려하여 전입로 조성 필요 - 역 공산 기획 - 향후 조성 예정인 남축 co파크와 프로그램이 유사하므로 연결용로 조성과 편의시설 배치 등 외부공간 연계를 고려
공공성 확보 방안	[샘플 데이터] ·부지 주변으로 po시설과 po관을 건립할 예정이므로 가로경관과 방문객 동선을 고려하여 경계부에 충분한 오른스페이스(보행광장, 가로공원 등)를 확보
기타 목수조건	[생물 데이터] -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마스터플랜 상의 취지와 목적을 유지하되, 공모 시 창의적인 계획이 가능하도록 주어진 면적 기준 내에서 8 수, 배치, 동선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침으로 제시

호 주동의 배치, 동선계획 등 외부공간 계획 시 고려해야할 사랑에 대해 기제, 공공건축물로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 호 상식적인 일반지함이 아닌 본 사업 추진 시 설계자가 검토해야 할 특수지함을 기술하는 것이 중요

2. 공간 및 시설계획의 주안점

구문	주요 고려사항
설계의 주안점	[샘플 데이터] - 주요 실별 고려사항 - 00실은 향후 필요에 따라 개별공간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 - 00장은 최소 00석 이상 확보해야하며 어린이와 성인 모두 관람이 편한 창의적 좌석구조 및 동선으로 설계 - 외부공간 계획 - 동선계획 - 보안시설이므로 1층 로비에 외부인의 접건이 가능한 공간 마련 - 00시설은 노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므로 주차장과 엘리베이터로 연결되어야 함

구 문	年요 고려사항
공공성 확보 방안	[샘플 데이터] ·시설 촬성화를 위해 접도된 북촉과 서축 도로에 면한 저층부를 개방감 있게 조성하고 1층 공용공간에는 인접지역 근무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고려
기타 특수조건	[생물 테이터] - po실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여 화제-목발 위협성이 있으므로 안전관리 대책 수립 필요

* 조님, 동선계획, 설비 구조 등 내부공간 계획 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기재 * 삼식적인 일반지질이 아닌 본 사업 추진 시 설계자가 검토해야 할 목수지점을 기술하는 것이 중요

3.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여 방안

주민 개방시설	[샘플 데이터]외부 조경 및 휴게공간과 북카페, 기획전시실 등 1층 출 로비 개방 예정
기타 지역 활성화 방안	

4. 향후 시설 운영·활용 계획

운영방식	○직접윤영 ○위탁윤영 ○기타()
운영주 체	
세부 운영계획 (운영인력, 운영프로그램, 운영경비 확보방안, 컨텐츠 확보방안, 교류협력계 확 등)	

첨부자료 목록표

7	æ	필수 점부	선택 침부
	1.전자공문		
MILLOLING	1. 사업의 목 적		
[1]사업개요	2. 사업 추진 경위		
	1. 지역 특성		
	2. 부지		
	3. 7 모		
[2] 사업계획	4. 예산		
	5. 발주방식		
	6. 향후 일정		
	7. 사업관리 체계		
	1. 배치계획 의 주안점		
	2. 공간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3] 건축계획	3. 지역 활성 화에 대한 기여 방안		
	4. 향후 시설 운영·활용 계획		

첨부자료 목록표

7	· 분	필 수	선 택	첨 부
공문(전자문서시스	:템)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 공문		
	1. 사업의 목적		- 상위계획 자료	1.1.1 도시기본계획
1 사업개요	2. 사업 추진경위	- 투자심사자료 및 예산승인 자료 - 건축기획 자료	- 중기재정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 - 기금운용계획 - 타당성조사 보고서 - 마스터플랜 보고서 - 기본계획(기본구상) 보고서 - 전문가 자문의견 - 지질조사 및 지반조사보고서 - 문화재 조사보고서 - 교통영향평가(교통성평가) 자료 - 환경영향평가(환경성평가) 자료 - 교육환경영향평가 자료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도서 - 관계기관 업무협약서	1.2.1 투자심사의뢰서 1.2.2 건축기획 자료 1.2.3 타당성조사 보고서 1.2.4 기본계획 보고서 1.2.5 마스터플랜 보고서
② 사업계획	1. 지역 특성	- 문화재보존관리지도 (http://gis-heritage.go.kr/re에서 부지 검색 후 규제정보 검색결과를 캡춰하여 제출)	- 부지 주변 지역의 도시계획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를 첨부 (참조) 도시계획정보서비스 (http://upis.go.kr/upispweb), 서울 도시정보 지도서비스 (http://gis.seoul.go.kr/SeoulGis/Naver/	2.1.1 문화제보존관리지도 2.1.2 부지 주변 도시제획정보

구 분		필 수	선 택	첨 부
			MetroInfo.jsp?tr_code=metroinfo)) - 설문조사 관련자료 - 언론기사 등 보도자료	
	2. 부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원) (http://luris.molit.go.kr/web/index.jsp) 부지 경계 및 레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적도, 수치지형도(CAD파일)) 기존 시설이 있을 경우, 건축물 대장 	 현재 부지상황, 주변 경관, 접근로 등이 확인 가능한 현황사진 토지특성조사표 부지 주변 위성사진 	2.2.1 도지이용계획확인원 2.2.2 수치지형도 2.2.3 건축물 대장 2.2.4 도지특성조사표
	3. 규모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해당구역만) 면적 산출근거 자료(유사사례 분석 등 수요조사 자료) 각 기관별 시설기준자료 	2.3.1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4. 예산	- 공사비 산출근거(조달청 공사비 분석자료, 예산편성 기준자료)	-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 각종 비용 산출자료	2.4.1 조달청 공사비 분석자료 2.4.2 20**년 시설예산 기준단가
	5. 발주방식		- 과업내용서 - 설계지침서	2.5.1 설계지침서 2.5.2 과업내용서
	6. 향후 일정		- 유사사례 조사 등 일정검토 자료	2.6.1 사업 일정계획
	7. 사업관리체계		- 전담팀, 자문위원회 등 추진협의체 구성 시 운영계획	2.7.1 TF팀 운영계획
③ 건축계획	1. 배치계획의 주안점		- 배치구상(안), 배치도 - 배치대안 검토자료	3.1.1 베치대안 검토자료
	2. 공간 및 시설		- 평면계획(안), 평면도	3.2.1 평면계획(안)

구	보 분	필 수	선 택	첨 부
	계획의 주안점		- 동선계획(안)	
	3.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여 방안		- 지역과 시설 간 협력·교류방안 등	3.3.1 지역활성화를 위한 기여방안
	4. 향후 시설 운영·활용 계획		- 운영·활용 방식, 주체 등 - 세부적인 운영·활용계획	3.4.1 세부 운영·활용계획

- ※ '필수' 첨부자료는 사전검토 신청 시 완비하여 제출해야하며, 첨부자료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내용이 부실할 경우 반려 또는 보완 요청할 수 있음, '선택' 첨부자료는 제출가능 시 첨부(첨부자료는 1.1.1, 1.1.2, ...의 순서로 표기)
- ※ '건축기획 자료(필수)'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디자인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① 주변 유사시설・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 ②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③건축물등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④향후 시설 운영・활용 계획, ⑤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⑥그 밖에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및 창의성 등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하는 사항'을 말함

보안각서 및 사전검토 전문가 업무일지(분야별검토)

□ 보안각서

사업명		접수번호	사 2021-0000
검토 분야	0000 분야	검토기간	2021.00.00.~2021.00.00.
소속 및 직위	/	성 명	

본인은 상기 사업의 사전검토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 일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6조(벌칙)에 따라 어떠한 제재조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1, 00, 00,

서약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건축공간연구원장 귀하

□ 세부업무내역

일 자	장소	검토 항목	전문가 서명
03.17	사무실	사업추진 및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	
03.25	사무실	건축디자인 기본방향-1(부지 현황 및 특성. 배치계획)	
03.31	사무실	건축디자인 기본방향-2(규모, 공간 및 시설계획의 주안점)	

□ 회의참석 교통비 내역

일 자	회의장소	출발지	거마비	전문가 서명

^{※ 2021}년도 예산집행지침 Ⅲ.세부운영 지침, 4. 자문위원 교통비 지급 기준을 따름, 단 일비는 제외함

0 -3113	-11 +1 u1 - -	
U. OH LEI		
7 70 0	계의한옷	
L 0 0	/비러 단포	

확인자: 공공건축지원센터장 (서명)